E - 44 - 2012

전기가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6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E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0 작성자 :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김두현 교수

o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

o 제·개정 경과

- 2010년 8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
- 2012년 4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o 관련규격 및 자료

- CEIS3 Safe use of electric kilns in craft and education
- KOSHA GUIDE E-7-2012(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침)
- KOSHA GUIDE E-109-2011(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)
- KOSHA GUIDE E-86-2011(정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)
- 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(전기로 인한 위험방지)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 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월 2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전기가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세라믹 산업에서 사용되는 전기가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술과 교육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전기가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치시 주의사항, 안전 요구사항,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전기가마(Electric kiln)"라 함은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끓이도록 만든 가마를 말한다.
- (나) "활선작업"이라 함은 작업자가 활선 또는 충전된 도체에 접촉하거나, 기구·장비 또는 장치를 다루는 신체의 일부가 활선 작업 구역 내에 있는 제반 행위를 말한다.
- (다) "유자격자"라 함은 전기설비의 시공·운전 및 기타 전기작업에 관련된 국가 기술자격 및 공인자격을 보유하거나 교육을 받은 자로서 일정기간 동일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.
- (라) "이격거리(Clearance)"라 함은 두 도전부 사이의 가장 짧은 경로로 뻗은 선을 따라 측정된 거리를 말한다.

E - 44 - 2012

- (마) "개폐장치(Switchgear)"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호 및 제어 장치의 개폐와 관련된 장치 등을 총칭하여 말하며, 발전, 송전, 배전, 변전 및 변환에 관한 결합체, 보조물, 상자와 지지 구조 등에 관련된 장치들의 집합체도 포함된다.
- (바) "연동장치(Interlock)"라 함은 장비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장치의 위치나 동작에 따라 개폐 장치가 동작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가마 설치 시 주의사항

- (1) 가마는 작업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설치되어야 하고. 격리된 방이나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.
- (2) 가마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내력바닥에 설치되어야 하며, 가마와 천장 사이는 충분한 이격거리가 있어야 한다. 만일 설치된 바닥의 강도가 적정한지 의심된다면, 설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야 한다.
- (3) 전기 가마 위에 공간이 제한될 경우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.
- (가)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가마위에 방열판을 사용하거나 금속 덮개를 설치해야 하고, 열이 대기로 추출되도록 연통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나) 덮개는 절연물을 사용하여 가마 출입구를 덮을 수 있어야 한다.
- (다) 가연성 물질 근처로 연통이 지나가는 경우,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라) 연통 설치는 배관 설치 전문가가 작업하여야 한다.

E - 44 - 2012

- (4) 가마에 인접한 바닥, 천장과 벽면은 모두 불연성 물질로 덮거나 만들어야 한다.
- (5) 가마의 유지 보수를 위한 접근성과 공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가마 주위에는 충분한 간격이 있어야 한다.
- (6) 고정적으로 결선되어 있지 않는 가마는 충분한 정격과 보호기능을 갖는 소켓에 직접 연결되어야 하며, 연장케이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(7) 가연성 물질이 가마 근처에 보관되거나 축적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.
- (8) 전기가마를 설치하기 전에, 유자격자는 구내의 전기계통이 안전하고 가마가 필요로 하는 정격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시험하여야 한다. 만일 그렇지 않다면, 사용에 적합한 전원계통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.
- (9) 가마의 금속 케이스는 화상이나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. 특히 어린아이, 일반인, 또는 장애우는 안전교육을 받은 후에 가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가) 격벽이나 가마 보호 철장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나) 내부에 사람들이 갇히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다) 조작장치는 격벽이나 보호철장 외부에 있어야 한다.
- (라) 열릴 때 가마 출입구로 인해 접근을 방해받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- (10) 가마는 부식성 가스, 가연성 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11) 유도장애가 크고 정전기, 자기 노이즈가 발생되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.
- (12) 설치장소는 정기적으로 환기를 해주고, 습기 제거 및 주변 바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
E - 44 - 2012

(13) 가마를 보관할 경우에는 뚜껑과 수분 배출 마개를 닫아서 보관하고, 덮개로 먼지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.

5. 안전한 작업을 위한 기본사항

- (1) 전기가마는 안전한 작업 절차(안전장치와 제어장치의 사용을 포함)를 숙지하고 있는 작업자가 사용하여야 하고. 고장의 인지와 비상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.
- (2) 작업자의 부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작업에 참여한 모든 작업자가 가마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고, 비상사태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한다.
- (3) 전기가마 뚜껑의 개폐 시 반드시 전기가마 내부온도의 적정온도(가마의 뚜껑개폐시 적정온도는 120 ℃ 미만)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. 높은 온도에서의 개폐는 전기가마 내부의 내화물, 열선 등과 기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.
- (4) 작업 안전 지침은 가마가 사용 중일 때 항상 적용하여야 한다.
- (5) 작업자는 작동하는 전기가마에 접촉할 경우, 열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방염작업복, 방염장갑, 보안경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, 컨트롤러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오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(6) 전기가마에 대한 작업 안전 지침과 비상시 절차서는 가마 책임자의 명단과 함께 명확히 보이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(7) 가마 내부의 온도센서는 충격에 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 열판이나 기물의 유출입시 주의하여야 한다.
- (8) 전기가마가 작동 중일 때에는 절대로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된다. 가마 상판의 조작, 손잡이 등은 온도가 높을 수 있어 화상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.

6. 전기안전을 위한 요구사항

- (1) 가마의 파손 및 고장방지를 위하여 정격에 맞는 전원전압을 공급한다.
- (2) 전원으로부터 용이한 접근을 막기 위한 격리 표시를 하여야 한다.
- (3) 적절한 정격을 갖는 차단기나 퓨즈에 의하여 과전류를 보호하여야 한다.
- (4) 단로 스위치와 가마의 연결은 환경에 적합한 내열성 절연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고, 기계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.
- (5) 접근이 가능한 외부 금속은 접지되어야 한다.
- (6) 전류가 흐르는 가열장치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, 전기가마와 가마의 전원 차단 장치는 연동장치를 사용하여 작동상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(7) 가마와 전원장치에서의 전기적 작업은 유자격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, 스위치기어 제어반에는 허가되지 않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장치가 있어야 한다.
- (8) 진단시험과 같은 필수적인 활선작업을 제외한 전기가마나 전기장치에 대한 활선 작업은 할 수 없다. 전기가마와 관련된 정전작업에 대한 것은 "정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(E-02-2006)"의 관련 조항을 따르고, 활선작업에 대한 것은 "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(E-30-2005)"의 관련 조항을 따른다.
- (9) 전기가마를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전기가마 제어반의 문과 덮개는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한다.
- (10) 가마를 전원에 연결하기 위해 연장된 연결선이나 다중 플러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(11) 입·출력 단자는 감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체, 통전물 등이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E - 44 - 2012

- (12) 가마에 물이 들어갔을 때에는 누전, 화재 위험성에 대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.
- (13) 전기가마의 소성작업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차단기를 내려야 하며, 가마 내부온도가 외부로 전달되어 표면이 뜨거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.

7. 유지보수

- (1) 전기설비와 가마는 소켓과 가요성 케이블의 접속 상태를 매월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.
- (2) 전기가마의 절연 상태, 본딩 및 접지 상태, 전기 보호장치의 작동 상태 등을 시험하고, 결함이 발견되면, 전기 설비와 가마는 결함이 해결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아야한다.
- (3) 가마나 전기 계통에서 행해지는 모든 작업은 유자격자와 숙련된 작업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.
- (4) 전기가마의 연동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고, 작동상태의 이상여부에 대하여 시험하여야 한다.
- (5) 가마에 관한 기술 정보는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(6) 설명서를 포함하여 가마에서 행해지는 모든 유지 보수 및 수리 작업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.
- (7) 가마의 열선 교체 및 부품 수리는 전원이 차단된 것을 확인한 후에 하여야 한다.
- (8) 열선 사이의 이물질로 인하여 열선의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.